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8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6.

발 의 자 : 우재준 · 김소희 · 서천호
박충권 · 조경태 · 김태호
김위상 · 김예지 · 이달희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사업,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음. 한편,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의2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 제7호).

법률 제 호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주택사업(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“지방직영기업”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	제2조(적용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주택사업	7. <u>주택사업(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)</u>
8. ~ 12. (생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